

## 법정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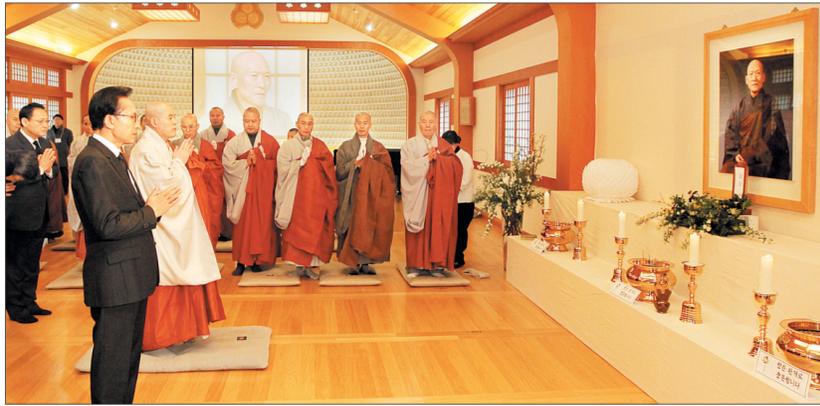
“많은 사람 수고 끼치는 의식 말라” 당부  
 13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다비식’ 거행

서울 길상사 전 회주 법정스님이 지난 11일 오후 1시 51분 송광사 서울 분원 길상사 행차실에서 입적했다. 세수 79세, 법랍 56세. 법정스님의 법구는 12일 오후 12시 출가본사인 조계총림 송광사로 이운해 13일 오전 11시 송광사 다비장에서 다비한다. (3월12일 오후 5시 현재)

법정스님은 입적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밤 상좌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세에 저 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해 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겼다. 법정스님은 또한 “번거롭고, 부질없으

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만 끼치는 일체의 장례의식을 행하지 말고, 관과 수의를 따로 마련하지도 말며,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며, 탑도 세우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2·3면

(무소유)와 (일기일회) 등 종교를 초월해 많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40여 편의 저서를 발표(口業)를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법정스님의 이 같은 마지막 말씀은 30여 년 전인 지난 1976년 발간된 (무소유)를 품소 실천한 것이다. 일체의 장례의식을



이명박 대통령 조문

이명박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일 서울 길상사 법당을 방문해 법정스님의 영정 앞에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

행하지 말라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다비 이외의 영결식 등 일체의 장례의식은 거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화나 부의금 등도 받지 않았다. 법정스님의 입적을 안타까워하는 사부대중의 애도문이 잇따라 발표되고 분향소에는 추모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지난 8일 법정스님을 병문안하고 쾌차를 기원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1일 애도문을 발표하며 이어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포교원장 해홍스님 등 중앙종

무기관 교역직 스님들과 함께 법구가 안치된 길상사 행차실을 직접 찾아 애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1일 애도문을 통해 “법정스님의 열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감출 길 없으며 전종도와 더불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추모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12일 애도 길상사를 찾아 삼배의 예를 올린 후 추모발원문을 낭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발원문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종단이 청정해지고 종

교간 화해가 더욱 탄탄해 질 수 있도록 애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조계종은 종단 법계 절자를 거쳐 법정스님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며 애도했다. 대선 후보 당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라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길상사를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큰스님께서 원적에 드셨지만 수많은 저서와 설법을 통해 남겨진 맑고 향기로운

## ‘대종사’ 법계 추서 총무원장 스님 조문

지혜와 마음은 우리 가슴 속에 오래 남을 것”이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조문 후 총무원장 스님과 경내에 있는 길상현에서 10여분간 별도로 만나 법정스님의 원적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정진석 추기경도 지난 11일 애도문을 통해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셨던 법정스님의 원적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이라면서 추모했다.

한편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 중앙총회회장 보선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스님 등 불교계 주요 인사들도 길상사를 찾아 조문했다. 또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이성수 박인택 기자

## 익명의 노스님 생명나눔 기금 1억원 기탁

익명을 요구한 70대 노스님이 ‘사후 시신기증 서약’에 이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1억원을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스님)는 “익명을 요구한 70대 노스님이 생명나눔을 위한 일에 써 달라며 1억원을 지난 8일 기탁해 주셨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노스님은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며, 지난 2000년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시신기증을 서약한 바 있다. 노스님은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마지막 가는 길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갈 마음이었으며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면서 “생명나눔 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 제183회 임시종회 폐회

지난 3월8일 개최한 제183회 임시종회가 중앙종무기관 결산검사를 진행한 후 10일부터 이틀간 주요현안을 처리하고 11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됐다. 사찰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수익금을 종단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총무원은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사찰 부동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종단 목적사업으로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전법회관 건립, 포교소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관련기사 2면

또한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서울

봉은사를 특별분당사찰에서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승인 안이 통과됐다. 선본사를 특별분당사찰로 전환하는 것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총무원 직영사찰은 조계사, 보문사, 선본사, 봉은사 등 모두 4곳이다.

이밖에 이번 임시종회는 △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비롯해 다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입적 후 승려사유재산 출연과 관련된 승려법 개정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총무원장 선거법 등 개정 필요성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 아쉬움을 남겼다.

조계종 중앙총회회장 보선스님은 “이번 회기에 다루지 못한 현안은 하안거 결제를 전후해 임시종회를 열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수 기자

## “불교의 미래·희망 만드는 불사” 승가교육 진흥위원회 출범

### 총무원장 자승스님 직접 관장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중진 스님들이 대거 참여하는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출범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영관에서 열린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식에서 불교신문 사장 선목스님, 선본사 주지 향적스님 등 신인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승가교육의 중요성을 설교한 법전 중정예하의 신년교시를 받들고, 제33대 집행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위원장을 맡아 종단의 백년대계를 직접 살피고 일구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창출한다. ▶관련기사 4면

법전 중정예하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교시에서 “교육을 통한 불교중흥의 대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불법의 흥망성쇠는 도제불사(徒弟佛事)의 공력(功力)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교

육불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가장 큰 기초공사”라며 “발족식으로 종단의 인재불사가 한층 더 도약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자승스님 △ 부위원장 : 현응스님 △ 위원 :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법인스님(교육원 교육부장) 법안스님(교육원 교육위원장), 계성스님(포교원 포교부장) 정목스님(중앙총회 교육분과위원장) 이상 당연직, 해국스님(석종사 금보선원장), 종상스님(중앙총회의원), 향적스님(선본사 주지), 선목스님(불교신문 사장, 도선사 주지), 명진스님(서울 봉은사 주지), 종광스님(중앙총회의원), 학담스님(중앙총회의원), 성관스님(동국대학교 상임이사), 도법스님(인드라 망생명공체제 상임대표), 지환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설우스님(창원 진불선원장), 종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미산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윤달스님(중앙총회의원),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이상 위촉직(무순)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 봉원사 문제 50년만에 해결

조계종-태고종 대표 ‘소유권 합의서’ 서명

조계종과 태고종이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오랜 갈등의 매듭을 마침내 풀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외 4명 대표단은 지난 10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서에 각 각 서명했다. 이로써 1962년 통합종단조계종 출범 이후 지속된 신촌 봉원사 소유권 문제가 약 50년 만에 마무리됐다. 양 종단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합의서의 내용은 봉원사 전체 토지 가운데 조계종은 7만5910㎡(2만3003평), 태고종은 26만660㎡(7만8987평)를 각각 소유토록 한 지난 1월2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준수하

기로 한 것이 골자다. 봉원사 법당과 요사채, 후사면은 태고종이 나머지 토지는 조계종이 갖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요사 3채는 조계종 소유, 주차장 부지와 비림은 태고종 소유로 돌아갔다.

가장 큰 쟁점도 타결됐다. 태고종이 1960년대에 제3자에게 매도했던 토지 6674㎡(2022평)은 조계종이 소유한다. 현재 조계종이 진행 중인 점유취득 시효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에 대해 태고종이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대토하기로 했다. 또한 조계종이 소유하게 된 토지 위의 건축물은 태고종이 철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2면에 계속

법정스님의 입적을 애도합니다.  
 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공고 제2010-1호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2009. 9. 18에 게재된 본위원회 공고 제2009-4호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추가연장 공고합니다. 2010. 3. 18.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 위원장

- 1. 신청기간**  
2010. 3. 18. ~ 2011. 12. 31.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 4. 신청서 접수처**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1) 직접(방문)제출 : 일과 시간내(09:00 ~ 18:00)  
2) 우편제출 : 신청기간내 도달  
나. 주소: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 5. 신청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각 1부 (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 대리인에 의한 신청 경우 : 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 위임장 1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①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②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 ③ 그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 면, 동장
- ④ 수용자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 등 산정
- 7. 심의·결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 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T. 02-748-5555)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10·27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알림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심의회위원회 신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 5. 1 이후는 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검색어 : '1027 법난')

## 10·27법난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 자료범위 : 10·27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 방법 : 전화, 방문수집, 우편제출
  - 접수처 : 140-12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02)748-5555
  - 활용 : 기념관·전시관내 전시, 자료발간 등
  - 기타 :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원단장